

태양광발전사업설비공사 도급계약서

(갑지)

태양광발전사업설비공사 계약일반조건

태양광발전사업설비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명			설치용량		
공사장소					
공사일정 (예정일)	발전사업허가	년 월 일	계약금액	일금 원정 (₩)	
	개발행위허가	년 월 일		금액내역	공급가액 일금 원정 (₩)
	전력수급계약신청	년 월 일	(일금 원정) (₩)		
	공사계획신고	년 월 일	(노무비) (₩)		
	사용전검사	년 월 일	부가세 일금 원정 (₩)		
	RPS 설비확인신청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대금지급 방법	선금	일금 원정 (₩) <계약체결후 일 이내 지급>			
	기성부분금	일금 원정 (₩) <공사진행중 일마다 (회)>			
	잔금	일금 원정 (₩) <준공후 일 이내 지급>			
계약이행 보증	일금 원정 (₩), 계약금액의 %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				
하자보수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	하자보수 보증금	일금 원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 년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위 내용을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첨부 : 1. 태양광발전사업설비공사 계약일반조건 1부. 2. 설계서 1부.					
발주자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인)
수급인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기공사업면허번호	
	연락처			대표자	(인)

제1조 (총칙) 발주자와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계약문서”는 이 계약서, 설계서를 말하며,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이 계약서, 설계서의 순서대로 우선적 효력이 있다.
2. “공급인증서(REC)”는 발주자가 사업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말한다.
3. “불가항력”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하여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표적인 예로 자연사, 폭풍우, 홍수, 지진, 낙뢰, 화재, 산업혼란, 재앙, 정부법령의 변동, 폭동, 반란, 전쟁, 전염병의 유행 등을 말한다.
4. “설계서”는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산출내역서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법”은 대한민국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말하며, 그 대체 또는 개정된 법률로 관련 고시 등을 포함한다.
6. “전기공사법”은 대한민국법을 전기공사법을 말하며, 그 대체 또는 개정된 법률로 관련 고시 등을 포함한다.
7. “제반 업무”는 태양광발전사업시설 완공 및 사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 전력수급계약체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사업개시신고 등)를 말한다.
8. “준공”이라 함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고,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운전 및 전력 판매가 가능토록 제반 업무가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신의성실 의무) ①수급인은 태양광발전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공사의 완성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제반자재, 설비를 최상의 품질상태에서 해당 자재나 설비와 관련된 제반문서에 부합하도록 조달하고, 필요한 숙련된 인원을 고용하며,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태양광발전사업시설의 완공 및 사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 전력수급계약체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사업개시신고 등)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관련 법규 및 일반산업기준에 따라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⑤발주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제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급인의 협조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⑥수급인은 성실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구축계획에 따라 자재, 장비, 인원을 조달 및 관리하며,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취득하여야 할 각종 인허가에 따른 필요서류를 제공하는 등 발주자가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감독원) ①발주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자재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발주자가 위임하는 일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시공관리책임자) ①수급인은 착공 전에 시공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리한다.

제6조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내역서) 수급인은 계약 체결후 ()일 이내에 설계서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 및 이 계약서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 (제반 업무 일정 포함)와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이행보증) ①수급인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 체결일 이후 ()일이 되는 날까지 전체 계약금액의 ()%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공하며, 감액의 경우 해당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②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증권 기타 증서

제8조 (이행보증금의 처리) ①이 계약서 제28조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이행보증금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거나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수급인이 이 계약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 또는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발주자는 기 납부 또는 제출된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선금) ①발주자가 선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제반 업무 수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부분의 대가}}{\text{계약금액}}$$

제10조 (자재의 검사 등)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중에서 발주자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사용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반출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③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로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발주자의 참여 또는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없다.

⑤수급인이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반출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불합격자재를 현장 외부로 반출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불합격자재를 현장외부로 반출할 때에도 발주자에게 보고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급자재와 대여품) ①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수급인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자재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현품 또는 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수급인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권 사용) 수급인은 특허권 등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안전관리비 계상 등) ①수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금액에 계상한다.

②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의한 보험료 등 당해 공사와 관련,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에 계상하도록 하며, 수급인은 산출내역서에 이를 반영하여 명시하도록 한다.

④발주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계상하도록 한다.

⑤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의무적 부담 비용에 대하여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실제로 지출된 금액여부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 (응급조치) ①수급인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5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태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수급인은 제1항의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상기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가 승인되었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 경비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제16조 (부적합한 공사) ①발주자는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발주자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수급인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대여품에 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③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④설계변경의 사유가 수급인의 과실로 발생된 경우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제19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 변동 후에 반입되었거나 제공된 자재 및 역무의 대가에 적용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

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5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실비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21조 (기성부분금) ①계약서에 기성 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공사기성내역서, 세금계산서, 감리조서, 증권 등 기성 부분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 결과와 제6조의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발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금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준공) ①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수급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수급인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대금지급) ①수급인은 발주자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이행지체) ①수급인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상태 등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발주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 (하자담보) ①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증서로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②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하에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 비용은 공제한다.

⑤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라 정한다.

제26조 (하자보수책임)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보수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품질보증) ①수급인은 발주자와 합의하여 일정기간의 품질보증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발전량(이하 “최저발전량”이라 한다.)을 1년간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발전량은 준공 후 매 1년마다 ()% 씩 차감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준공 직후 발전소의 최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품질보증기간을 지연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②수급인은 품질보증기간 동안 매 1년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제 발전량이 최저발전량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1년간 발전량이 최저발전량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귀책사유가 수급인에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사, 수리, 교체 등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

호 서식]에 따라 산출된 손실보전비용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기상상황의 악화, 불가항력의 사태, 발주자의 시설유지보수 미흡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전량이 미달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④품질보증기간 내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도 최저 발전량에 계속 미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추가적인 손실보전비용 및 절차에 대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와 별도 합의하여야 한다.

⑤수급인이 본 항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미지급금 전액을 발주자에게 지급하는 날까지 미 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태양광모듈(wp)은 ()의 정품 모듈로서 보증기간은 납품회사의 보증서로 대체한다.

⑦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계통연계형 인버터는 ()의 정품 인버터로서 보증기간은 납품회사의 보증서로 대체한다.

제28조 (발주자의 계약해제 등) ①발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인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2. 계통연계 용량 부족에 따라 정상적인 발전설비 운영 및 전력 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발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은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 (손해배상 등) ①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착공전 계약이 해제되고,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급인은 선금을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반업무에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 (관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수급인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전기공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①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 (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손실보전비용 계산

- 품질보증기간 : 년 개월(20 ~ 20)
- 년간 최저발전량 : MWh
 - 최저발전량은 설비의 용량, 해당지역의 일사량, 일조시간 등 기후조건, 설비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출
 - “수급인”은 연간 최저발전량을 품질보증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마다 ()% 씩 차감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손실보전 조건
 - 품질보증 기간 내 1년간 실제 발전량이 최저발전량에 미달할 경우
- 손실보전비용
 - ① 계통한계가격 관련 손실보전비용
(최저발전량 - 실제발전량) × 계통한계가격(SMP)
 - * 발전량과 계통한계가격(SMP)을 월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월별 산정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년간 발전량 또는 해당 기간의 월별 평균 수치를 적용한다.
 - ** 실제 발전량은 발전소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의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발전량으로서 계통한계가격(SMP) 등 산정에 적용된 발전량 적용하고 계통한계가격은 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kpx.or.kr)의 가격을 적용한다.
 - ② 공급인증서 매매 관련 손실보전비용
(최저발전량 - 실제발전량) × 공급인증서 가중치 × 공급인증서 매매가격
 - * 공급인증서 매매 가격은 실제 공급인증서를 매매한 월의 가격을 적용하며, RPS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전하지 않으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최저발전량으로 인한 손실보전비용을 포함한 전체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